

성여부와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겠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후관리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음.

- 기업민원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민원 해결(안 제21조~제23조)
  -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담하는 기구(현재:BIZ119)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민원처리지원을 실질적인 윈스톱 구축체제를 마련한 점에 대하여 긍정적이라 하겠음.
- 위와 같은 서울지역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사업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공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산업국(농수산유통과) 사무명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 업 국 (농수산 유통과)	9.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6항 ○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 령 제33조	구청장

별표의 환경국(대기과) 사무명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국 (대 기 과)	8.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조치의 명 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확인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 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다. 과태료처분 통지등 부과 및 징수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2조  ○ 동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구청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의 환경국(조경과) 사무명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국 (조 경 과)	1.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청앞의 가로수 녹지대 설치 및 관리, 노폭 20m이상 도로신설시의 가로수·녹지대 설치는 제외)	○ 도로법 제3조, 제24조	구청장
	2.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점용허가 다.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원상회복	○ 도시공원법 제11조, 제12조  ○ 동법 제12조의2 ○ 동법 제9조, 제12조의2제4항	구청장
	라.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매수청구 마.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점용료징수 및 원인자 부담금 바. 부담금의 강제징수	○ 동법 제12조2제5항 ○ 동법 제15조, 제16조  ○ 동법 제18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건설안전본부장 구청장
	3. 세종로, 시청앞의 가로수·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4조	
	4.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수·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4조	구청장
	5. 수렵면허	○ 조수및수렵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호수의 관리(지정, 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 산림법 제68조 및 제70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기업”이라 함은 시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